



수험소식 및 수험자료

2018년도 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행계획 공고

1. 선발예정인원

시험명	계	법원사무직렬	등기사무직렬
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	10명 내외	8명	2명

2. 응시자격

가. 응시결격사유 등

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나. 응시연령

시험명	응시연령	해당생년월일
법원행정고등고시	20세 이상	1998. 12. 31. 이전 출생자

다. 학력·경력 : 제한 없습니다.

3. 시험방법

○ 제1차 시험 : 선택형 필기시험 ○ 제2차 시험 : 논문형 필기시험

4. 시험과목

시험명		구분	제1차시험	제2차시험
		법원사 무직렬	헌법, 민법, 형법, 영어(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), 한국사(한 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	행정법, 민법(친족·상속법 제 외), 형법, 민사소송법, 형사소송 법
법원행정 고등고시	법원사 무직렬			

법원행정 고등고시	등기사 무직렬	헌법, 민법, 형법, 영어(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), 한국사(한 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	행정법, 민법(친족·상속법 제 외), 상법(총론·회사편), 민사소 송법, 부동산등기법
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	---

5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등

가.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

시험의 종류	토플(TOEFL)			토익 (TOEIC)	텡스 (TEPS)	지-텔프 (G-TELP)	플렉스 (FLEX)
	PBT	CBT	IBT				
기준 점수	530점	197점	71점	700점	625점	65점 (Level2)	625점
청각장애 2·3급 응시자 기 준점수	352점	131점	35점	350점	375점	43점 (Level2)	375점

※ 청각장애 2·3급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(말하기 포함) 부분을 제외
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·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
되어 있어야 하며,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
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나.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2015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
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,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
영되지 않습니다.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
으로 실시하는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의 승진·
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성적 등은 인정하지 않습
니다.
- 2015년 6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
에서 응시한 G-TELF성적은 인정됩니다(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).

다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

-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(통상 2년)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
기관을 통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.

- 따라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, 별도로 안내한 '사전등록 일정'에 따라 「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」 인터넷 홈페이지 (<http://exam.scourt.go.kr>)에 접속하여 해당 성적을 사전등록 해야 합니다.
- ※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가 확인 되지 않는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 일정, 등록방법, 성적표 원본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2017. 12. 19.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7 - 185호 “2018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”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의 기재 및 성적표 등 제출방법

-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성적이 발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, 응시원서 접수 시 그 점수 등 영어능력검정시험란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.
-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마감 이후부터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, 추가등록 기간{2018. 8. 20.(월)09:00 ~ 8. 24.(금) 18:00} 내에 반드시 그 점수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추가등록하여야 합니다.
-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(사전등록하여 확인 '완료'된 성적을 끌어와 입력한 경우에는 그 사전등록한 성적) 및 추가등록한 성적은 추후 그 성적표 원본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성적표 원본 등 제출대상자, 제출시기 등은 추후(제1차 시험 합격자발표 시 등)에 「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」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6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가.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(등급)
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 2급 이상

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2014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(등급)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,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

다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의 기재 및 성적표 등 제출방법

-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성적이 발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(등급)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, 응시원서 접수 시 그 점수(등급)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란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.

-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마감 이후부터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서 기준점수(등급)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, 추가등록 기간(2018. 8. 20.(월) 09:00 ~ 8. 24.(금) 18:00) 내에 반드시 그 점수(등급)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추가등록하여야 합니다.
-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및 추가등록한 성적은 추후 그 성적표 원본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성적표 원본등 제출대상자, 제출시기 등은 추후(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등)에「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」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7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시험명	접수 및 취소기간	구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제36회 법원행정 고등고시	접수기간 : 6. 1. ~ 6. 12. (취소마감일 : 6. 15.)	제1차 시험	7. 31.(화)	8. 25.(토)	9. 13.(목)
		제2차 시험	9. 13.(목)	10. 26.(금)~10. 27.(토)	11. 27.(화)
		인성검사	11. 27.(화)	11. 30.(금)	
		제3차(면접) 시험	11. 27.(화)	12. 6.(목)	12. 14.(금)